

약관 변경 내용

1. 투자신탁의 명칭

프레스티지 성장 주식투자신탁 제 2 호

2. 신탁약관 변경 시행일 : 2006. 9. 7

4. 신탁약관 변경 주요 내용: 종류형 약관으로 변경됨

변경사항	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	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
제1조 (목적등)	①~② <생략> <신설>	①~② <생략> ③ 이 투자신탁은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수익자의 다양한 투자성향에 부합하도록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제8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금()원으로 하고 설정할 수 있는 <u>수익증권</u> 의 총좌수는 1조좌로 한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금()원으로 하고 설정할 수 있는 <u>수종</u> 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1조좌로 한다.
제9조(추가신탁)	자산운용회사는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u>수익증권</u> 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자산운용회사가 결정한다.	자산운용회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u>수종</u> 의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자산운용회사가 결정한다.
제10조(신탁금의 납입)	①<생략> ②자산운용회사는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수탁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u>기준가격</u> 에 추가로 설정하는 <u>수익증권</u> 좌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중 추가로 설정하는 <u>수익증권</u> 좌수에 최초설정시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은 원본액으로,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	①<현행과 같음> ②자산운용회사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수탁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u>당해 종류 기준가격</u> 에 추가로 설정하는 <u>당해 종류</u>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중 추가로 설정하는 <u>당해 종류</u> 수익증권좌수에 최초설정시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은 원본액으로,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
제13조(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 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u>수익증권</u> 으로 표시한다. ②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등에 관하여 <u>수익증권</u> 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갖는다. ③수익권은 투자신탁의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u>수익증권의 종류별로</u> 1 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u>수종</u> 의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 ②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등에 관하여 <u>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종류별로</u>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갖는다. ③수익권은 투자신탁의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u>당해 수익증권의 종류가 같다면</u>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제14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자산운용회사는 제 8 조 및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u>수익증권</u>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①자산운용회사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u>수익증권</u>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

	<p>경우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증권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p> <p><신설></p> <p>②~④ <생략> <신설></p>	<p>우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증권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u>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u>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Class A 수익증권</u> <u>Class I 수익증권</u> <p>②~④ <현행과 같음></p> <p><u>⑤제1항 각호의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하거나 수익증권의 종류 변경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 4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u></p>
<p>제18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p>	<p>①~⑤ <생략></p> <p>⑥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증권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u>수익권의 좌수</u>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⑦~⑧ <생략></p>	<p>①~⑤ <현행과 같음></p> <p>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증권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u>수익권의 종류 및 좌수</u>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⑦~⑧ <현행과 같음></p>
<p>제19조(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시)</p>	<p>①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p> <p>② <생략></p> <p>③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000 원으로 하고 이 경우 1 좌는 1 원으로 한다.</p> <p>④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자산운용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p><신설></p>	<p>①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u>[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u>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u>[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u>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 <u>[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u>”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u>[당해 종류 수익증권]</u>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 <u>(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u>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하고 이 경우 1좌는 1원으로 한다.</p> <p>④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이 투자신탁의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u>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자산운용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 <u>(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u>을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u>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 공지하지 아니한다.</u></p> <p><u>⑤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신탁의 약관 변경으로 새로이 신설되는 종류 수익증권 중 제20조의 종류 A 수익증권은 약관변경</u></p>

		이전에 기 발행된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승계하여 적용한다.
제20조(수익증권의 판매기준)	<신설>	<p>①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Class A 수익증권: 제한 없음 2. Class I 수익증권: 간접투자자산운용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간접투자기구 <p>②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이 조의 변경일 이전에 매수한 수익증권은 종류 A 수익증권으로 본다.</p>
제20-1조(수익증권의 판매가격)	<p>제 20 조(수익증권의 판매가격)</p> <p>①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하며,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 3 조제 2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단, 토요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으로 한다.</p> <p>②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5 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p>	<p>제 20-1 조(수익증권의 판매가격)</p> <p>①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하며,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3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단, 토요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으로 한다.</p> <p>②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5 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p>
제20-2조(판매수수료)	<p>제 20-1 조(판매수수료)</p> <p>①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한다.</p> <p>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의 100 분의 1 범위 내에서 납입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을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 20-2 조(판매수수료)</p> <p>①수익자가 Class A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한다.</p> <p>②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의 100 분의 1 범위이내에서 납입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을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p> <p>③Class A 수익증권 외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에는 선취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제22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p>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2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한다)에는 제3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p> <p>②~④ <생략></p>	<p>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2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한다)에는 제3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p> <p>②~④ <현행과 같음></p>
제23조(환매수수료)	이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①Class I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 21 조제 2 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p><신설></p> <p><신설></p>	<p>경우에는 그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 재산에 편입한다.</p> <p>②제 1 항에 의한 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p> <p>1. 90 일미만 : 이익금의 70%</p> <p>③Class I 수익증권 외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p>
제24조(수익증권의 일부 환매)	<p>① <생략></p> <p>②제1항의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 대하여 자산운용회사는 제21조 내지 제23조, 제25조 내지 제27조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u>수익증권을</u> 교부한다.</p>	<p>① <현행과 같음></p> <p>②제 1 항의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 대하여 자산운용회사는 제 21 조 내지 제 23 조, 제 25 조 내지 제 27 조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u>당해 종류</u> 수익증권을 교부한다.</p>
제25조(수익증권의 환매 제한)	<p>① <생략></p> <p>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p> <p>2. <생략></p>	<p>① <현행과 같음></p> <p>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p> <p><u>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을 보유한 수익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류 수익자총회인 경우 이 조항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보유한 수익자에만 적용된다.</u></p> <p>2. <현행과 같음></p>
제27조(수익증권의 부분 환매)	<p>①~③ <생략></p> <p>④자산운용회사는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u>기준가격</u>을 산정하여 <u>수익증권을</u> 발행 및 판매할 수 있다.</p> <p>⑤ <생략></p>	<p>①~③ <현행과 같음></p> <p>④자산운용회사는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u>당해 종류 기준가격</u>을 산정하여 <u>당해 종류</u> 수익증권을 발행 및 판매할 수 있다.</p> <p>⑤ <현행과 같음></p>
제28조(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p>①~② <생략></p> <p><신설></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u></p>
제29조(수익자총회의 소집)	<p>① <생략></p> <p>②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자산운용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1 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p>	<p>① <현행과 같음></p> <p>②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u>특정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된 수익자총회의 경우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증권총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u>)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p>

	<p>한다.</p> <p>③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은 후 1 월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p> <p>④~⑥ <생략> <신설></p>	<p>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자산운용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1 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p> <p>③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은 후 1 월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u>특정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된 수익자총회의 경우에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총수</u>)의 100 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p> <p>④~⑥ <현행과 같음> ⑦제 28 조 제 3 항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 2 항, 제 3 항 및 제 6 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총수”는 발행된 당해 <u>종류 수익증권총수</u>로 본다.</p>
제30조(수익자총회의 운영)	<p>①~② <생략> <신설></p>	<p>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 28 조 제 3 항에 의한 수익자 총회는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총수”로 본다.</p>
제33조(수익자총회의 연기)	<p>①~③ <생략> <신설></p>	<p>①~③ <현행과 같음> ④제 28 조제 3 항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 1 항 및 제 3 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총좌수”로 본다.</p>
제38조(운용제한)	<p>①<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생략> 나. <생략> 다.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매일의 당해주식의 종가의 총액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종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3 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 비중은 <u>매년 3월.6월.9월.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3월간 적용한다.</u> 	<p>①<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매일의 당해주식의 종가의 총액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종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u>1 월간 평균한 비율</u>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u>매월 말일</u>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u>1 월간</u> 적용한다.
제40조(투자신탁보수)	<p>①~② <생략>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p>	<p>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u>당해 종류 수익증권</u> 보수율에 <u>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u>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p>

	<p>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산운용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7.5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5.0 3. 수탁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5 <p><신설></p>	<p>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1. Class A</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산운용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7.5 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5.0 3. 수탁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5 <p>2. Class I</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산운용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7.5 2. <u>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3.0</u> 3. 수탁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5
제41조(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등)	<p>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u>수익자</u>의 부담으로 하며,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탁회사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p> <p>②제 1 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4. <생략> 5.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9. <생략> <p><신설></p>	<p>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u>전체</u>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탁회사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u>다만, 특정종류 수익증권의 소지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u></p> <p>②제 1 항에서 “<u>전체</u>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4. <현행과 같음> 5. <u>전체</u>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9. <현행과 같음> <p>③제 1 항의 단서규정에서 “<u>특정종류의 수익자에게만 부담시키는 비용</u>”이라 함은 당해 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특정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 총회 관련 비용</u> 2. <u>특정종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비용</u>
제43조(이익분배)	<p>①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u>이익금</u>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에 분배한다.</p> <p>② <생략></p>	<p>①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u>당해종류 수익증권별</u>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에 분배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제44조(이익분배금에 의한 수익증권매수)	<p>①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다</p> <p>②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수익자별 매수 수익증권의</p>	<p>① <u>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제 43 조에 의한</u>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새로운 당해 <u>종류의</u> 수익증권을 매수한다.</p> <p>②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u>종류</u> 수익자별 매수 수익증</p>

	<p>합계수량을 자산운용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용회사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제 14 조제 1 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p>	<p>권의 합계수량을 자산운용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용회사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제 14 조제 1 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p>
부칙	<p><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변 경)</p> <p>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의 정한 사항은 2006년 9월 7일부터 시행·적용 한다.</p>